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53 제출년월일: 2012. 6. 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야생동물 서식지인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산양삼 등 임산물은 야생 동물로부터 피해예방 대책이 어려우므로 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피해보상을 최소화하고,
- 평창군유해야생동물구제단의 구성·운영·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.
 -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임산물(안 제5조제4호)
- 평창군유해야생동물구제단 설치, 구성, 지원 근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
 - 농작물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유해야생동물구제단을 설치·운영함(안 제10조)
 - 구제단은 30명 이내로 하고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함(안 제11조)
 - 군수는 급식비, 유류비, 실탄비, 보험료, 유해야생동물구제 보상금 등 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(안 제12조)

□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

다. 관계부처 협의 : 해당없음

라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"를 "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피해(이하"피해"라 한다)"를 "피해"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농작물의피해"를 "농작물 등의 피해(이하 "피해"라 한다)"로, "자에 대하여"를 "자에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자에 대하여"를 "자에게"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피해농가중"을 "피해농가 중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임산물

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"농작물등"을 각각 "농작물 등"으로 한다. 제7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읍면장은 이장 또는 반장과 피해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.

제7조제3항 후단 중 "농가에게"를 "농가에"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구제단의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 유해야생동물 구제단(이하 "구제단"이라 한다)을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구제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. 농작물 등 피해지역 조사
- 2. 농작물 등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의 구제
- 제11조(구제단의 구성·운영) ① 구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.
 - ② 구제단은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.
- 제12조(지원 등) 군수는 급식비, 유류비, 실탄비, 보험료, 유해야생동물구제 보상금 등 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|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|
|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|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| 제1조(목적) |
|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<u>피</u> | |
| 해(이하 "피해"라 한다)를 예방 | <u> 피해</u> |
| 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 | |
| 여 안정적인 농업, 임업경영을 목 | |
| 적으로 한다. | |
| 제3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| 제3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|
| 및 보상) ①야생동물로 인한 <u>농작</u> | 및 보상) ① <u>농</u> |
| 물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| 작물 등의 피해(이하 "피해"라 |
| 한 시설을 설치하는 <u>자에 대하여</u> | <u>한다)</u> |
|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| <u>자에게</u> |
| 지원할 수 있다. | |
| | |
| ②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 | ② |
| 접적인 피해를 입은 <u>자에 대하여</u> | <u>자에게</u> |
|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 | |
| 할 수 있다. | |
| 제5조(보상 제외대상) <u>피해농가중</u> | 제5조(보상 제외대상) <u>피해농가 중</u> |
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| |
| 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| |
| 다. |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4.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임산물 |

4. (생략)

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(생 략)

-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
- 2. 농작물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지 워과 관련된 사항
- 3. (생략)

제7조(피해신고 및 조사절차) ① · 제7조(피해신고 및 조사절차) ① · ② (생략)

장이 정밀 조사한다. 이 때 피해 입증 책임은 농가에게 있다.
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(현행과 같 음)

(2) -----

1. <u>농작물등</u> 피해보상금 산정심의 1. 농작물 등 -----

2. 농작물 등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장 또 ③ 읍면장은 이장 또는 반장과 피 는 반장, 피해농가 입회하에 읍면 | 해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 를 실시한다. --------- 농가에 ----.
-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제10조(구제단의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 창군 유해야생동물 구제단(이하 "구제단"이라 한다)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구제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- 1. 농작물 등 피해지역 조사
 - 2. 농작물 등에 피해를 끼치는 유 해야생동물의 구제

제11조(구제단의 구성・운영) ① 구

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 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 한다. ② 구제단은 농작물 등의 피해상 황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운영 할 수 있다. <신 설> 제12조(지원 등) 군수는 급식비, 유 류비, 실탄비, 보험료, 유해야생 동물구제 보상금 등 구제단 운영

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

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12조(지원 등) 군수는 급식비, 유류비, 실탄비, 보험료, 유해야생동물구제 보상금 등 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.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| 작성자 | 평창군 환경과 환경과장 최찬웅 |
|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연락처 | (033) 330 -2340 |

관계법령

□ 야생동·식물보호법

- 제12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·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·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·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.
 - 1.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·식물특별보호구역
 - 2.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·도야생동·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·식물보호구역
 - 3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·경관보전지역
 - 4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
 - 5. 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자연공원
 - 6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 공원구역
 - 7.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
 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(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) ①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 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,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

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를 받고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·포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야생동·식물보호법 시행령

제7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)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1.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·방조망(防鳥網)·경음기(警音器)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- 2. 피해보상기준 :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·임산물·수산물 등의 피해액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- ②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□ 야생동·식물보호법 시행규칙

- 제31조(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)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1. 인명·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·포획도구·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
 - 2.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

-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포획하여야 한다.
- 1.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하되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요청하여 대행(총기를 이용한 포획의 경우에 한한다) 하도록 할 것
- 2.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총기류,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